

의 안 번호	1993	<b>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: 2022. 9. 7.(수)
- 나. 제출 자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. 9. 7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: 2022. 9. 16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한영필)

### 가. 제안이유

-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공간제공을 위해 설치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청소년 관련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,
- 『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위탁 대상시설 및 기간

시 설 명	위 치	시설면적	위탁기간
성남 청소년문화의집	중앙길 78(성남동)	421.23㎡ (4층)	2023.1.1.~2025.12.31.(3년)

#### 2) 위탁사무의 범위

-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
- 중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그 밖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- 3)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- 4) 소요예산: 398,436천원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청년 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본 동의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받아
-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공간제공을 위해 설치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관련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큰 거 법 규

## 「청소년 기본법」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5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-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##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6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-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 계약의 기간·조건·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
<신설 2017. 12. 12.>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-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  
<개정 2017. 12. 12.>

[전문개정 2014. 1. 21.]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6.12.30>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20.8.3.><개정 2021.1.4.>

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승인 및 동의)

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